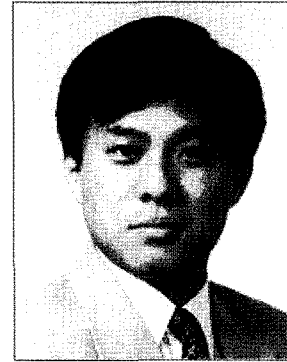


영국구조기술사회와의 MOU 연장 체결과 향후 과제



1. MOU 체결

2010년6월3일 건축구조기술사회 사무국에서 영국구조기술사회와 "Agreement of Cooperation"라는 제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협약은 2006년에 이미 체결된 것을 연장한 것으로서 내용상으로 아무런 법적 구속이 없이 상호간에 발전과 이익을 위해 협력하자는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문서이므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협약서의 원본은 영국구조기술사회에서 작성해서 회장이 날인한 문서를 한국에서 우편으로 받아 우리회 이문곤 회장이 날인을 함으로써 체결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엔지니어링회사를 운영하



염 경 수 국제위원의 위원장
(주)하모니구조엔지니어링 대표

는 Mr. Mark Lenczner가 연락관으로서 본 체결을 위하여 우리회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며, 우리회에서는 이문곤 회장님, 김종호 전회장님, 박정민 총무단장, 강도안 부회장, 염경수 위원장, 김상모 이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양국의 구조기술사회지를 교류하지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회 회지 기사의 제목을 영문으로 병기하고 영문 초록을 실으면 국제적인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준회원제도를 도입하여 양국 기술사회의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미래의 엔지니어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술사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2. MOU의 주요 내용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이 협약은 3년간 유효하며 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검토하여 상호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3년을 연장한다.
- 2) 각 기술사회는 본 협약에 의한 행위를 구체화할 담당자를 선임하기로 한다.
- 3) 본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업무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는 사안별로 결정하되 각 기술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 4) 본 협약에 포함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관련 정보의 교환
 - 원 저자의 승인 하에 기술기사 및 논문 등을 출판
 - 각 기술사회가 기술관련 출판물의 저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출판물의 교환을 장려
 -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협업 장려
 - 학생 및 교수의 교환 장려
 - 상호 관심을 가지는 기술관련 행사에 대한 정보교환 장려
 -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각 기술사회가 자회의 회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권고 및 편의를 제공

3. MOU 체결 전 영국구조기술사회의 의견 접수

본 MOU를 체결하기 전 영국구조기술사회의 연락관인 Mr. Mark Lenczner로부터 본 협약의 연장과 관련하여 영국 기술사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메일로 전달받았습니다. 아래는 영국구조기술사회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전달하도

록 Mr. Mark Lenczner에게 보낸 메일을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귀하가 KSEA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방문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함. 귀하의 보고서는 고무적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협약을 갱신했으면 함. Martin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별 문제가 없다고 봄, 실질적인 관심사는 협약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가능성을 언급하고자 함.

1. 본회는 현재 정회원이 될 수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대학생을 무료회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이 최근 가입한 워싱턴협약과 같이 인가된 대학의 학생은 무료회원신청이 가능함. 무료회원은 문서열람이 허용되고, 회의 및 교육을 web상으로 참여할 수 있음. KSEA의 경우 학교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300명의 기술사 회원들이 학생들을 위한 연락관의 역할을 하여 학생들을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함.
2. 본회는 졸업생 회원제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회원이 되기 위한 능력함양을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기술사회로서는 회원수의 증가는 분명하나 수입 측면에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임. 회원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졸업 후 1년 차에게는 가입비의 66% 할인, 2년 차에게는 33% 할인을 적용함. 연간 수입이 15,000파운드 이하인 회원은 60%의 할인율을 적용함. KSEA가 당 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면 한국의 학생 및 졸업생의 전문 기관에 대한 접근 기회가 확대될 것임. 당회는 독립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나, 대학과 회사 내의 핵심 인력들에 의존해야 함.
3. KSEA의 대학 및 연구소 소속된 300명의 기술사 회원에 관해서 연구 및 개발 지침에 대한 논의는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본 지침은 7시간 CM시험보다는 연구검토를 포함하며 학계 회원들에게는 보다 적합하고 호소력이 있다고 봄. 학계회원의 회원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면 한국 내 대학과 학생들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음.
4. 전문가 재조사 면담과 CM시험은 보다 긴밀한 협력 기회를 제공함. 구두시험에 대한 기사에 보면 인정기술면허 응시자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우리는 KSEA와 어떤 방법으로 평가 방안을 설정할 것인가 및 상대측에서 일하고자 할 경우 자격부여에 있어서 면제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등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함. 이것은 수개월을 요하는 보다 큰 논의 사항이며 이후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도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임. 따라서 우선 상호 서명을 통해 협약을 맺고 상세 논의는 후에 진행하면 될 것임. 미국과의 협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상호인정에 KSEA의 의견을 알고 싶음.
 당회의 면접 시간은 한 시간이며 합격률은 80%이고, 시험의 합격률은 35~36%임. 과거 당회는 상호 인정에 대해 쌍방향 진행을 취하였음. 한쪽에서 시험 합격을 인정하면 상대방에서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시험은 필요한 것으로 함. 이 방법이 선호될 것으로 보이나 KSEA가 당회 회원의 완전 인정을 원치 않는다면 당회는 KSEA 회원에게 다른 인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5. 새로운 CPD 의무규정이 도입되었음. 당회는 기술 잡지나 책자, 온라인 회의/교육/발표회 등을 통해 KSEA 문제의 해답을 제공할 수 있음. 당회는 회원들이 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향상된 수준의 CPD규정을 제공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음.
6. 표준과 유로코드와 관련된 사항은 동료에게 일임하였음. 나는 동료에게 당회의 회원이 됨으로서 회원들이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였음.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 KSEA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 KSEA에게 당 회가 저들로부터 회원들을 선발해 가려는 것이 아님을 인식시켜야 하며 오히려 KSEA의 회원이 실무를 할 수 있는 보다 확대된 전문가 여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많은 나라에서 이 과정은 Joint Division을 구성해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CPD 활동, 면접, 시험 등을 실시함으로써 달성된다.
- 당회는 경쟁보다는 협력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회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4. 영국구조기술사회의 의견에 대한 우리회의 의견 정리

영국구조기술사회가 개진한 의견에 대하여 강도안부회장과 국제위원회의 김상모 이사, 방중석이사, 장광식 이사가 우리 회의 의견을 토의하기 위하여 사무국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참석한 모든 이사들은 영국구조기술사회가 보낸 메일을 통해 한국구조기술사회와의 협력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긴 시간의 준비시간과 논의가 필요한 큰 사안들도 있고, 단순히 우리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범주의 사안이라고 판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사 자격의 상호 인정에 대한 사항은 FTA 관련 등의 국가적 차원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위원회에서는 각 이사들이 우리회가 제시할 수 있는 협력방안부터 정리해 보았습니다.

• 강도안 부회장 의견

1. 우리회에서도 구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직장인과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주는 준회원 제도의 실시
2. 우리회 기술사회지 기사 일부의 영문화(제목만이라도), 또는 기술사 시험을 영문화해서 회지에 실어서 시험문제 교류
3. 설계 기준의 교류 ; 질문과 답변 정도로 시작하여 회지에 실는 방법
4. 기술사 인증교류는 EMF(Engineers Mobility Forum) 국제기술사를 통해 시작하는 방법 ;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에서 국제기술사를 검색할 수 있으며 영국도 가입하고 있음

• 김상모 이사 의견

1. 서신의 내용으로 볼 때 대학생의 회원참여와 상호 자격인증으로 크게 두 가지 제안임.
2. 우리 대학생들에게 영국구조기술사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는 유럽의 기준습득이나 선진기술을 보다 빠르게 접목할 수 있는 등의 원론적으로 장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전에 우리 기술사회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제도, 즉 구조전공 대학원생이나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실무를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회원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영국과 한국의 구조기술사회에서 상호 자격을 인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기술사회가 인정을 하였을 때 영국 기술사가 국내에서 자유로운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반대로 영국구조기술사회에서 자격인증을 받은 국내 기술자가 영국에서 기술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지, 양국의 구조기술사회 상급 기관의 재가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등 현안 해결이 요구됨. 이러한 문제들을 APEC기술사 인증 등으로 대체할 경우 영국 측의 적극적

인 제안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됨.

4. 그러므로 양국 기술사회의 자격인증으로 완전한 자격행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고자 경쟁할 때 우리 회가 인정하는 기술자가 제안할 경우 발주처 의 신뢰를 가중시키는 정도라도 상호 교류를 검토하는 것을 제안함. 물론 영국의 상황은 모르겠으나 반대의 경우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이 경우 상호 검증하는 방법은 기초적인 시험과 실무 경력(주요 프로젝트 실적, 전문 분야 근무기간) 평가 등으로 수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이 외에 상호간에 기준이나, 잡지, 기술자료, 교육자료 등을 교류하는 방안 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동의하되 언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영어로 발간하되 우선은 한글본(제목, 목차는 영문 병기)도 제공하여 관심부분에 대해서는 번역을 요청받아 제공하는 방법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7. 또한 기술사 시험문제를 상호 제공하여 양국의 기술자가 상대국에서 시험의 경향을 보고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듯함.

• 방중석 이사 의견

1. 기존협약의 연장 및 강화 방안 (개선)

- 1) 학술 및 정보교류 구체화 - 기술기사 및 설계사레 상호 게재
- 2) 구조관련 업무 상호협력 - Project 상호수행 (업무분담)

2. 인력교류

- 1) 학생/연구기관/일정수입 이하 회원에 대해 준회원 대우
- 2) 준회원 및 정회원 상호 교육 및 연수 참여기회 부여

3. 상호 자격 인정

- 1)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향후 우리 회의 추진방향이라 판단됨
- 2) 단, 영국 구조기술사회와 달리 국내 기술사 자격은 준 국영 기관에서 일정경력 평가와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 회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단체임. 기술사의 선발 및 관리는 우리 회의 권한 밖에 일로서 영국 구조기술사회와의 기술사 상호 인증에 대한 권한이 없음. 그러나, 영국 구조기술사회에서 제시한 상호 기술인증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3) 상호 기술인증 제도의 대안으로 양 협회 차원에서 협의 후 경력심사와 면접 등을 통하여 각 협회가 인정하는 명 예기술사를 상호 부여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능한 방법으로 판단됨.
- 4) 양 협회가 좀 더 강화된 협력관계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추가적인 논의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5. 향후 과제

금번 MOU 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영국구조기술사회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력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시작한 이래 오랜 세월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 크게 의존해 오던 기술 변방국에서 대영제국이라 불리던 전통의 기술 선진국으로부터 대등한 존재감을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느낌도 가져 보았습니다. 또한 저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하는 비즈니스적인 이유

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본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에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우리 회에서 실천이 가능한 것부터 교류를 시작하여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천 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한 우리 회의 의견을 정립하는 일부터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파악한 바로는 영국의 경우 기술사 시험을 통한 기술사 자격 제도가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성과물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기술사의 날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기술사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기술자임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수단으로써 그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적인 성과물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작성자가 그동안 축적한 실적에 근거한 명성이며, 이는 설계보험료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래 전 시작된 산업화와 신용사회의 전통 및 환경 속에서 정착된 것으로 보이며,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룩한 우리나라하고는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은 선진 각국의 기술사 제도와 기술사의 책임 및 권한의 한계 등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행을 평가해보고 하나하나 개선 및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저희 국제위원회의 가장 중점 사업으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